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미기재된 사항이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2022년 2월 11일 공고 내용 중 공급금액 건축비 표기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공급금액 건축비 정정 전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 시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2.07.15	2023.01.13	2023.07.14	2024.01.15	2024.07.15	2025.01.15		
84	347	1	7	92,559,000	336,003,000	417,670,000	20,000,000	2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125,301,000	
		2	7	92,559,000	345,183,000	426,850,000	20,000,000	2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128,055,000
		3	13	92,559,000	354,363,000	436,030,000	20,000,000	2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130,809,000
		4	13	92,559,000	363,543,000	445,210,000	20,000,000	2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133,563,000
		5~10	78	92,559,000	372,723,000	454,390,000	20,000,000	2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136,317,000
		11~20	130	92,559,000	377,313,000	458,980,000	20,000,000	2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137,694,000
		21층 이상	99	92,559,000	381,903,000	463,570,000	20,000,000	2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139,071,000

★공급금액 건축비 정정 후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 시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2.07.15	2023.01.13	2023.07.14	2024.01.15	2024.07.15	2025.01.15		
84	347	1	7	92,559,000	325,111,000	417,670,000	20,000,000	2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125,301,000
		2	7	92,559,000	334,291,000	426,850,000	20,000,000	2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128,055,000
		3	13	92,559,000	343,471,000	436,030,000	20,000,000	2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130,809,000
		4	13	92,559,000	352,651,000	445,210,000	20,000,000	2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133,563,000
		5~10	78	92,559,000	361,831,000	454,390,000	20,000,000	2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136,317,000
		11~20	130	92,559,000	366,421,000	458,980,000	20,000,000	2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137,694,000
		21층 이상	99	92,559,000	371,011,000	463,570,000	20,000,000	2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139,071,000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을 각 **일정별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예약 방문제로 운영**합니다.
분양 일정, 청약 안내, 상품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홈페이지(<http://pt-humanvill.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 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은 **오픈 기간[2022.02.11.(금)~2022.02.20.(일)]** 중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방문 관람**이 가능하며,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홈페이지 (<http://pt-humanvill.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인원 제한 : 예약자 본인 외 1명, 미예약자 입장 불가)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일자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예약일자 및 시간을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외 1인만 입장 가능)**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견본주택 방문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견본주택 입장 가능 여부 대상 구분

1)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한 경우

- ① 백신 2차 접종 완료(14일 경과) ~ 6개월(180일) 이내
- ② 백신 미접종자 :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확인 문자 제시
- ③ 아래 (a) 또는 (b)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기 ① 또는 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a) 격리 해제 확인서(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지참 (b) 접종 예외자는 의사 소견이 첨부된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지참

2) 견본주택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 당사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 견본주택 입장이 불가합니다.

- ①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한 경우 이외의 자
- ②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제한 및 즉시 퇴관 조치
 - (a) 견본주택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
 - (b) 비접촉 체온계를 통해 측정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 (c) 견본주택 입장 시 손 소독, 체온 측정, 전자출입명부(QR코드) 및 방문자 기록 등 방역 절차에 불응할 경우
 - (d) 기타 코로나19 감염 유사 증상(기침, 발열 등)이 있거나, 견본주택 운영방침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 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 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의 분양상담 및 전화(1577-9333)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11.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거주 '성년자'와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 신청자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 시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 신청자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그 밖의 지역 거주 신청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분리하였으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 접수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1.)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 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 가. 시행일(18.12.11) 전 공급 계약된 건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 지급일
 -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검색 결과상 동일 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 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 지급일
 -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 (계약 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필요	다자녀 필요	신혼부부 필요	노부모부양 필요	생애최초 필요	1순위 필요	2순위 필요
청약통장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의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www.applyhome.co.kr)>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 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pt-humanvill.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접수유형과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 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

가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가점·추첨제 공급 비율 -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세대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02.11.)'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해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부적격 당첨자(또는 계약자)의 당첨(또는 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세대에 대한 임의공급/입주자모집공고 사후 무순위 아파트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매제한기간(특별공급/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단,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 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초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2021.01.0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해당) [평택시 6개월 이상]	일반1순위(기타) [평택시 6개월 미만, 전국]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2년 2월 21일(월)	2022년 2월 22일(화)	2022년 2월 23일(수)	2022년 2월 24일(목)	2022년 3월 3일(목)	2022년 3월 5일(토) ~ 3월 14일(월)	2022년 3월 16일(수) ~ 3월 20일(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 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견본주택 방문 접수 (10:00~17:00) *사전 방문 예약제(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성해리 292 * 방문 예약은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홈페이지 (http://pt-humanvill.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은 기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5394호(2022.02.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7-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11개동, 총 1,468세대

[특별공급 770세대(일반[기관추천] 145세대, 다자녀가구 145세대, 신혼부부 292세대, 노부모부양 43세대, 생애최초 14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047	01	059.9816A	59A	59.9816	24.2985	84.2801	42.6096	126.8897	41.4695	435	43	43	87	13	43	229	206	16
		02	059.9751B	59B	59.9751	23.9832	83.9583	42.6050	126.5633	41.4650	344	34	34	68	10	34	180	164	13
		03	074.9828	74	74.9828	25.8608	100.8436	53.2662	154.1098	51.8409	342	34	34	68	10	34	180	162	13
		04	084.9840	84	84.9840	29.6750	114.6590	60.3708	175.0298	58.7555	347	34	34	69	10	34	181	166	13
	합 계										1,468	145	145	292	43	145	770	698	5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면적은 소수점 4번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시		
									2022.07.15	2023.01.13	2023.07.14	2024.01.15	2024.07.15	2025.01.15			
59A	435	1	12	65,328,000	229,582,000	294,910,000	10,000,000	19,491,000	29,491,000	29,491,000	29,491,000	29,491,000	29,491,000	29,491,000	29,491,000	88,473,000	
		2	12	65,328,000	236,062,000	301,390,000	10,000,000	20,139,000	30,139,000	30,139,000	30,139,000	30,139,000	30,139,000	30,139,000	30,139,000	30,139,000	90,417,000
		3	16	65,328,000	242,542,000	307,870,000	10,000,000	20,787,000	30,787,000	30,787,000	30,787,000	30,787,000	30,787,000	30,787,000	30,787,000	30,787,000	92,361,000
		4	16	65,328,000	249,022,000	314,350,000	10,000,000	21,435,000	31,435,000	31,435,000	31,435,000	31,435,000	31,435,000	31,435,000	31,435,000	31,435,000	94,305,000
		5~10	96	65,328,000	255,512,000	320,840,000	10,000,000	22,084,000	32,084,000	32,084,000	32,084,000	32,084,000	32,084,000	32,084,000	32,084,000	32,084,000	96,252,000
		11~20	160	65,328,000	258,752,000	324,080,000	10,000,000	22,408,000	32,408,000	32,408,000	32,408,000	32,408,000	32,408,000	32,408,000	32,408,000	32,408,000	97,224,000
		21층 이상	123	65,328,000	261,992,000	327,320,000	10,000,000	22,732,000	32,732,000	32,732,000	32,732,000	32,732,000	32,732,000	32,732,000	32,732,000	32,732,000	98,196,000

59B	344	1	5	65,321,000	226,109,000	291,430,000	10,000,000	19,143,000	29,143,000	29,143,000	29,143,000	29,143,000	29,143,000	29,143,000	87,429,000	
		2	5	65,321,000	232,519,000	297,840,000	10,000,000	19,784,000	29,784,000	29,784,000	29,784,000	29,784,000	29,784,000	29,784,000	29,784,000	89,352,000
		3	13	65,321,000	238,919,000	304,240,000	10,000,000	20,424,000	30,424,000	30,424,000	30,424,000	30,424,000	30,424,000	30,424,000	30,424,000	91,272,000
		4	13	65,321,000	245,329,000	310,650,000	10,000,000	21,065,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93,195,000
		5~10	78	65,321,000	251,729,000	317,050,000	10,000,000	21,705,000	31,705,000	31,705,000	31,705,000	31,705,000	31,705,000	31,705,000	31,705,000	95,115,000
		11~20	130	65,321,000	254,939,000	320,260,000	10,000,000	22,026,000	32,026,000	32,026,000	32,026,000	32,026,000	32,026,000	32,026,000	32,026,000	96,078,000
		21층 이상	100	65,321,000	258,139,000	323,460,000	10,000,000	22,346,000	32,346,000	32,346,000	32,346,000	32,346,000	32,346,000	32,346,000	32,346,000	97,038,000
74	342	1	5	81,667,000	274,783,000	356,450,000	15,000,000	20,645,000	35,645,000	35,645,000	35,645,000	35,645,000	35,645,000	35,645,000	106,935,000	
		2	5	81,667,000	282,623,000	364,290,000	15,000,000	21,429,000	36,429,000	36,429,000	36,429,000	36,429,000	36,429,000	36,429,000	109,287,000	
		3	13	81,667,000	290,453,000	372,120,000	15,000,000	22,212,000	37,212,000	37,212,000	37,212,000	37,212,000	37,212,000	37,212,000	111,636,000	
		4	13	81,667,000	298,283,000	379,950,000	15,000,000	22,995,000	37,995,000	37,995,000	37,995,000	37,995,000	37,995,000	37,995,000	37,995,000	113,985,000
		5~10	78	81,667,000	306,123,000	387,790,000	15,000,000	23,779,000	38,779,000	38,779,000	38,779,000	38,779,000	38,779,000	38,779,000	38,779,000	116,337,000
		11~20	130	81,667,000	310,033,000	391,700,000	15,000,000	24,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117,510,000
		21층 이상	98	81,667,000	313,953,000	395,620,000	15,000,000	24,562,000	39,562,000	39,562,000	39,562,000	39,562,000	39,562,000	39,562,000	39,562,000	118,686,000
84	347	1	7	92,559,000	325,111,000	417,670,000	20,000,000	2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41,767,000	125,301,000	
		2	7	92,559,000	334,291,000	426,850,000	20,000,000	2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42,685,000	128,055,000	
		3	13	92,559,000	343,471,000	436,030,000	20,000,000	2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43,603,000	130,809,000	
		4	13	92,559,000	352,651,000	445,210,000	20,000,000	2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44,521,000	133,563,000	
		5~10	78	92,559,000	361,831,000	454,390,000	20,000,000	2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45,439,000	136,317,000	
		11~20	130	92,559,000	366,421,000	458,980,000	20,000,000	2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45,898,000	137,694,000
		21층 이상	99	92,559,000	371,011,000	463,570,000	20,000,000	2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46,357,000	139,071,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가전 옵션 등)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 모형물과 공급안내문,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59A	59B	74	8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15	12	12	12	51	
	장기복무 제대군인	4	3	3	3	13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4	3	3	3	13	
	중소기업 근로자	4	3	3	3	13	
	장애인	경기도	8	7	7	7	29
서울특별시		4	3	3	3	13	
인천광역시		4	3	3	3	1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 (50%)	22	17	17	17	73	145
	기타지역 거주자 (50%)	21	17	17	17	72	
신혼부부 특별공급		87	68	68	69	29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	10	10	10	43	
생애최초 특별공급		43	34	34	34	145	
합 계		229	180	180	181	770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p>무주택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p>청약자격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 입주자저축 등 청약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82 699 2130 951"> <thead> <tr> <th>구분</th> <th>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기관추천)</td> <td>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td> </tr> <tr> <td>다자녀가구</td> <td>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td> </tr> <tr> <td>신혼부부</td> <td>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td> </tr> <tr> <td>노부모부양</td> <td>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td> </tr> <tr> <td>생애최초</td> <td>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td> </tr> </tbody> </table>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2 983 2130 1222"> <thead> <tr> <th>구 분</th> <th>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	일반(기관추천)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다자녀가구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혼부부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노부모부양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생애최초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구 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																																
일반(기관추천)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다자녀가구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혼부부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노부모부양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생애최초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구 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p>재당첨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청약과열지역 :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 바랍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이후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신청 시 무주택 청약서 등으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분리세대 포함)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공급 세대에 미달된 경우, 잔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소명기간(7일) 이내에 부적격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분	해당 추천기관	연락처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031-259-1783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31-201-6942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9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2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 수에는 태어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기준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 높은 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택시 6개월 이상 (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함.) 나머지 50%는 경기도 우선공급 낙첨자를 포함하여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2)+(3)+(4)+(5)+(6)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9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7년(전 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6호(2021.11.16.)]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기준**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천]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 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허가증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 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부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기준** :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①~④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아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5호(2021.11.16.)]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160%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임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휴직 등의 경우 소득 산정 방법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합니다.
-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④ 상기 ②, ③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기준 : [소득 ▶ 거주지역(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 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순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이 가능한 '성년자' :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청약자격제한, 1순위 청약접수일정 분리,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 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공급비율 - 85㎡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됩니다.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포함))에 속한 자

거주 구분	청약순위	자격요건 및 안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건설지역 :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021.08.11 이전부터 연속 거주) ■ 기타지역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1순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필수 자격요건(아래 ①~⑤ 모두 해당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기간 2년 이상 ② 입주자저축 인정금액 : 입주자저축별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납입인정금액) 충족 ③ 세대 구성원 : 세대주 ④ 주택 소유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포함) ⑤ 당첨 사실 :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는 자(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포함)

■ 기타지역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	-----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 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별 예치금액(납입인정금액) 및 가입기간 충족요건

구분	충족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예금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예치금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부금	매월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85㎡ 이하 주택형만 청약신청 가능)

※ 기타 입주자저축 안내

- 청약저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잔액 기준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청약부금 : 85㎡ 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p>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청약자 본인은 제외)</p> <p>- 적용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p> <p>1)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p> <p>2) 무주택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p> <p>나) 단, 직계존속 1인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p>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예: 청약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p> <p>라)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p> <p>마)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p> <p>바)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p> <p>3) 직계비속(자녀·손자녀)</p> <p>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p> <p>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p> <p>다)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제외</p> <p>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아래의 경우 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p> <p>※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됩니다.</p>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1명	10	5명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만 18세 이상 청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 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기준일 관련 청약신청 자격 변경 요건

- 1)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가) 청약예금의 신청 주택 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가능
나) 청약부금은 85㎡ 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 2)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청약 가능
나) 세대구성원에서 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자격 충족
- 3)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시 청약 가능(감액 사유 시 변경 불필요)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함)

- 청약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
- 청약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

구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당첨자 계약 ②	잔여세대		잔여세대 추가계약 ①	주택 소유 판단
				미분양(가)	미계약(나)		
A유형(타입)	100	200(경쟁)	100	X	X	-	② 주택 소유
B유형(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 주택 소유 / (나) 주택 소유
C유형(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② 주택 소유 / (가), (나) 주택 소유 아님
D유형(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② 주택 소유 / (가) 주택 소유 아님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② 정당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 소유로 봄.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 당첨자가 계약 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 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 소유로 간주함.

-계약 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판정 기준 및 '소형·저가주택 등' 특례 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 기준

경합	주택수	적용기준
규칙 제53조 각호(제5호 20㎡ 이하 제외)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규칙 제53조 제5호(20㎡ 이하) ⊕ 소형·저가	2	제5호 미적용 및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규칙 제53조 각호 ⊕ 제5호(20㎡ 이하)	1	제5호 미적용
규칙 제53조 각호(제5호 20㎡이하 제외)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0	모두 적용
규칙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 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 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형별 가점·추첨제 공급 비율 : 전용 85㎡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조건 승낙이 불가)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세대수 만큼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pt-humanvill.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 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IV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

■ 청약신청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시	신청 방법 및 신청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2.21.(월) (인터넷 : 청약Home 09:00~17:30) (정보취약자: 견본주택 10:00~14:00)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홈" 앱 - 정보취약자 : 견본주택(평택시 안중읍 성해리 292)
일반공급	1순위(해당)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2022.02.22(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홈" 앱 - 정보취약자 :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
	1순위(기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2022.02.23(수) 09:00~17:30	
	2순위 전국지역 거주자	2022.02.24(목)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 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 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 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 시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8.11.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 신청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 신청자의

청약신청 접수일을 분리하였으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1순위(해당) 접수일에만 청약 가능 /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전국지역 거주자 : 1순위(기타) 접수일에만 청약 가능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 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며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 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 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방문 청약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1.)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2.03.03.(목) -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 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Home' 모바일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홈 검색")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3.03.(목) ~ 2022.03.12.(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청약 소통방 > 당첨 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3.03.(목)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입주대상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2022.03.05.(토) ~ 03.14.(월) 10:00~17:00 - 장소: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성해리 292) - 방문일 예약 안내
일반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 당첨자 서류 접수 시 방문일 예약은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홈페이지(http://pt-humanvill.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자격 확인 서류 제출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 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일정 예약 후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시 방문계약일 예약은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홈페이지(<http://pt-humanvill.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외 1인만 입장 가능)**
-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 및 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포함)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 2022.03.05.(토) ~ 03.14.(월) / 10:00~17:00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제 출 처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성해리 292 / 1577-9333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1.)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당첨자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 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증명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간주)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며, 공통서류 및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1.)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내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은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 직장, 세무서)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견본주택 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의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가격증명일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 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 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 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청약신청자 본인)**

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결정세액 환급 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Ⅶ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 공급(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2022.03.16.(수) ~ 2022.03.20.(일) (5일간) 10:00~17:00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성해리 292) - 방문일 예약 안내 - 당첨자 서류 접수 시 방문일 예약은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홈페이지(http://pt-humanvill.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계약 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제출 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수입인지(인지세)	○		-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위임장		○	-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 계약 불가 · 견본주택 내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17-0024-6264-01	일신건영(주)

※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505호 홍길동의 경우 ⇒ 1010505)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분양사무소)은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청약, 계약 시 분양상담사가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시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주택담보 대출 유무, 기본양권 중도금 대출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므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에 의하여 개인별로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평택시가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 등)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권리의무승계 계약성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 등)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2금융권 등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률의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에 의하여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 시 자기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청약,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미신청 또는 개인신용불량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무이자 대출 미적용에 따른 공급금액 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실행 이후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납부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수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양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당첨자가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금된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 세대 발생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추천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 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모든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 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세대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에 따라 추첨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공급받은 경우 본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초 공급계약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공급대금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3.03.16	입주 시
59A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59B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74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84	7,480,000	748,000	748,000	5,984,000

2)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17-0024-6266-71	일신건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 선택 품목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505호 홍길동의 경우 ⇒ 1010505)

※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고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세대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지만 가능)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선택 시에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공상 및 계약관리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중도금 납부일자 이후에는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본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옆 세대 비확장 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 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문 상의 이미지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의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당사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됩니다.
- 전등 설치 위치가 층별로 상이하므로 이로 인한 설치 위치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재의 내용)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의 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 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써(추가 전용부분 제외)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쉽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구분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모델명		비고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실내기	실외기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59A	선택1	[거실, 침실1]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삼성전자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AJ025MXHNBC1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삼성전자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침실 2,3(AJ016MB1PBC2)	AJ030MXHNBC1	
59B	선택1	[거실, 침실1]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AJ025MXHNBC1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침실 2,3(AJ016MB1PBC2)	AJ030MXHNBC1	
74	선택1	[거실, 침실1]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거실(AJ072MB1PBC1) 침실1(AJ023MB1PBC1)	AJ030MXHNBC1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침실2,3(AJ020MB1PBC1) 알파룸(AJ016MB1PBC2)	AJ040MXHNBC1	
84	선택1	[거실, 침실1]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거실(AJ072MB1PBC1) 침실1(AJ032MB1PBC1)	AJ030MXHNBC1	
	선택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베타룸]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거실(AJ072MB1PBC1) 침실1(AJ032MB1PBC1) 침실2,3(AJ020MB1PBC1) 알파룸,베타룸(AJ016MB1PBC2)	AJ050MXHNBC1	

2) 빌트인 가전 제품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품목	선택안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전타입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선택1	삼성전자	NZ63A8708XW(화이트)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59A, 59B	비스포크 냉장고 (냉장, 냉동, 김치)	선택1		RR40A7895AP + RZ34A7865AP + RQ34A7845AF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74, 84	비스포크 냉장고 (4D냉장고, 3D김치)	선택1		RF60A91R1AP + RQ33T7401AP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냉장고(문 없음) + 김치냉장고장이 시공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수납장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 배치를 위하여 약 90cm 이상의 폭이 확보되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에 따라 약 15cm 이상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옵션 전기인덕션 선택 시 기존 가스쿡탑(3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기인덕션은 세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3) 기타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전타입	현관 중문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에어샤워기	770,000	77,000	77,000	616,000
	침실3 풀퍼니처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59A, 59B	에어드레서 3벌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74, 84	에어드레서 5벌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59A	복도 팬트리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59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74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59A	침실3 붙박이장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59B		1,560,000	156,000	156,000	1,248,000
74		1,560,000	156,000	156,000	1,248,000
84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59A	침실1 확장대 + 드레스룸(기본)	3,320,000	332,000	332,000	2,656,000
59B		2,920,000	292,000	292,000	2,336,000
74		3,020,000	302,000	302,000	2,416,000
84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59A	침실1 확장대 + 드레스룸(고급)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59B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74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84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59A	우물천정 간접조명	700,000	70,000	70,000	560,000
59B		750,000	75,000	75,000	600,000
74		850,000	85,000	85,000	680,000
84		850,000	85,000	85,000	680,000
59A	거실/주방 타일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59B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74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84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74	기본형 주방	아일랜드식탁(일반MMA)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연장형주방 선택 시 선택가능
		엔지니어스톤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특화주방 (연장형)	연장형 주방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엔지니어스톤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알파룸팬트리(슬라이딩포함)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측면 장식장	1,980,000	198,000	198,000	1,584,000	
84	기본형 주방	아일랜드 식탁(일반MMA)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엔지니어스톤	4,650,000	465,000	465,000	3,720,000	
	특화주방 (독립형)	독립형주방(후드포함)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엔지니어스톤	4,440,000	444,000	444,000	3,552,000	
59A	아일랜드 식탁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59B	아일랜드 식탁(장식장포함, 일반MMA)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59A	주방엔지니어스톤(아일랜드 포함)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59B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59B	침실2 슬라이딩도어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84	일반가구 장식장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장식장 선택 시 슬라이딩도어 선택가능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4)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농협은행	317-0024-6268-41	일신건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505호 홍길동의 경우 ⇒ 1010505)

※ 추가 선택 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 품목 공사 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5)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 등이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선택 품목의 사양, 제조사 및 설치 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

- 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인조대리석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옵션 품목과 동일한 삼성전자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단, 견본주택 설치 시스템 에어컨에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하여 온풍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나, 실제는 냉방 기능만 있음)되어 있으므로 설치 위치, 수량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품의 디자인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각 세대 내 실외기 설치 공간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 설치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별 선택이 불가능하며,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주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실외기 설치 공간에 냉매 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그릴 설치)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IX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발코니 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청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 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 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 도로는 단지 내 레벨 계획으로 인한 단 차이가 있어 일부 옹벽, 조경석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과 레벨 차이로 인해 단 차이가 발생하며 본 공사 시 마감 계획은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외벽은 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구부가 설치되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 세대 및 상층 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 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헬륨,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지상 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소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의 높이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 모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 1층 및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지상 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헬륨의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캐노피가 벽면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필로티 계획 및 기동 위치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아파트 및 부대시설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 차이에 의한 주민 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상주차장 등의 이유로 각 동의 1층 위치가 상이한 바, 계약 전 세대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입주 및 등기, 면적 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사용 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 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 이미지컷,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사업설명회 등 홍보용 VR동영상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 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지상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 환풍 DA,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배수구(입상관 포함)의 제작사 및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의 제작사 및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벌,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청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 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 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 평면의 경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불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은 단지 모형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온도조절기, 바닥 드레인, 선홍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칭>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외부 시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 자문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지상 주차장 환기용 그릴, 제연 DA 그릴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 및 CG 상에 표현된 주변 지역의 레벨 및 공원, 조경 계획은 단순 참고 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계약 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킹서비스/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지상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 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추가 설치에 따라 부대시설의 층수 및 세대별 계약면적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 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 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 차로 인해 배수 펌핑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 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지상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클럽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 형태, 입면 장식 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원칙으로 계획, 시공하였습니다.
- 단지 내 지하/지상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지상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 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 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 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 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 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에 인접하여 펌프실, 전기실, 지하/지상 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량 통행 구간 유효 높이 지하 1층 2.3m, 지하 2층 2.7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입주예정자에게 동의 여부를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문의,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문의에 대한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여부가 확인이 되고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가결이 있는 후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19조의2에 따라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체(또는 관할 지자체)에게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찬성하지 않거나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의하는 경우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어린이집 시설(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① 평택시(평택시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자 포함)에서 무상 사용(최초 사용 개시일은 어린이집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② 사용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을 운영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주체와 평택시가 단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평택시 간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해당 협약상 사업주체의 권리·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협약의 해제·해지 요건 - 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반대가 있거나, ② 단지 내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된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평택시가 단지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제반 비용 및 손해배상 일체를 평택시에 배상할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에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승계한 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반대(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협약의 해제·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택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 및 각종 기자재 총 구입비 중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마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액 감가상각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평택시에 보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까지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이 가능하고, 입주민 자녀 우선 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외부에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평택시 간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이후 평택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용도로 운영하기 위해 단지 사용검사일 이후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당하고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사업주체와 평택시간 체결되는 단지 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상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단지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관련 조항이 편입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평택시는 단지 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령 및 경기도, 평택시 영유아보육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되더라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어린이집 개원 인허가,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단지 입주 개시 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평택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 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 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선을 위한 옥상 조형물, 입면 돌출벽 등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 가려질 수 있고 하부 및 인접세대의 별도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품 및 동선 개선을 위한 동출입구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상세 검토를 통해 규모, 형태, 디자인 및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 창호 주변 진입로가 형성되거나 시설물로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추가 설치에 따라 부대시설의 층수 및 세대별 계약면적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접 동의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지상 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레벨 극복을 위해 대지 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 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 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환경개선(기능)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단지 전체의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 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방은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 일조 및 민원 사항>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주변 대지와와의 레벨 차이에 따른 옹벽 및 조경으로 인해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선큰, 주차 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및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 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입주민용 및 상가용)는 단지 내 반영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 공용 엘리베이터가 주변에는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지상 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 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지상 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 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정면상부 및 측벽에 조명형 BI가 설치되며 인접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옥탑 상부에 경관 조명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휠롤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배치상 인접 세대 위치 및 창호설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용 가공 전주 설치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아파트 주차장 공유내용 명기>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별도로 계획되었으며,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랜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 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설치)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 매립 배관과 관련 시설물(콘센트)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냉매 매립 배관 및 관련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기본 에어컨이 아닌 추가설치 에어컨은 실외기 설치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 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 배관 등 타 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보조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온수분배기는 주방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며, 싱크 하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 자동소화장치(가스, 전기 검출)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에도 주방 가스공급용 배관이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갭마감 처리됩니다.
- 양변기는 관련 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실외기 설치 공간의 경우 비난방 공간입니다.
- 각 실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선택에 따라 기구류(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샷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 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 설치 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공간에는 그릴창이 설치됩니다.
-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하여 창호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한기에는 최소한의 난방가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가구,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 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기본형 옵션 및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하부장)의 하부에는 부식 등의 하자 방지를 위하여 마루(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등 가구 뒷벽과 하부에는 벽지 및 타일 등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힘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 벽체(침실·욕실·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 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 도어 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타입별 평면에 따라 개폐 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똑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LG U+와 제휴된 IoT 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 및 연동 가전, AI스피커(LG U+ 제품)에 한함) 등은 입주자가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3년간 무상서비스 제공 후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AI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등에 동체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실 문 뒤 벽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 발코니 비확장 및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 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등에 사용된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매가 노출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일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입주 전까지 공급 될 예정이며, 필요시 가스공급을 위한 단지정압기가 조정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A/C 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준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부지로서 현재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으로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성계획 변경에 의한 계획고,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사업의 개발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준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 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을”은 이에 대해 “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예정 위치: 101동, 102동, 108동, 109동, 110동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 1층 헬룸 104동, 106동, 107동(3개소), 지하2층 헬룸 104동, 106동, 107동(3개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 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은 가칭)화양3초 통학구역 내에 위치해있으나, 학교 설립계획 및 개교시기는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양3초가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 불가능할 경우 본 단지 내 입주 예정인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 만약 본 단지에서부터 임시 배치되는 초등학교까지 통학환경이 취약하여 도보 통학이 불가능하거나 원거리 통학일 경우, 사업주체는 통학 대책(통학 버스 운영,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입주 예정인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컴퓨터 전산 추첨을 통해 안중중학군(안일중, 안중중, 현화중) 또는 지구 내 설립 예정인 중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나, 지구 내 중학교 설립계획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군(구) 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동될 수 있으므로 배정 일정 및 방법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내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교)에 배치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본 단지 내 입주 예정인 중·고등학생이 기존 학교로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하도록 입주 전까지 해당 관청(평택시청)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 정비 및 버스노선 신설 등의 통학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평택 화양지구 내 계획 중인 학교는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립추진이 가능하며, 초·중·고 학생배치계획은 학교설립계획 보류(취소), 개발(실시)계획 변경,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X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 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 내진 등급 : 1등급, 내진설계 능력(MMI진도 : VII/설계지반최대가속도 0.169g)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단열 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설계용 외기 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조명설치	적용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평택화양지구 7-1블럭 공동주택
2. 신청 자: 익신건설(주)
3. 대 지 위 치: 경기도 평택시 평택화양지구 7-1BL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1. 경량층벽 차단성능	★★★★
2. 중앙층벽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고품층벽으로, 횡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전동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20. 영계밀 녹지율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름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사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사적기주차량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임·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공공간에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밀즈 확보율	*
13. 홈네트워킹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승강기 난기류	★★
5. 복도 및 계단 유호난마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1월 14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평택화양지구 7-1블럭 공동주택
건축주	익신건설(주)
건축(예정)일	-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화양지구 7-1BL
층 수	지하 2층, 지상 29층 / 1468세대
면 적	213,235.7141㎡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 계 자	㈜하우드엔지니어링(주)평택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2-0056-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2.1.14. ~ 사용종결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량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9호
평가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평가기준	평택부고시 제2021-65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중량등급 ★★☆☆

토지이용 및 교통	31%
에너지 및 환경영양	67%
재료 및 자원	52%
유선관리	39%
생활환경	53%
실내환경	62%

2022년 1월 14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한국 주택 환경을 넘어 해외, 국제시장에 대한 인증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평택화양지구 7-1블럭
건축연도	20200225
주 소	경기 평택시 평택로 155-3외
층 수	지하 2층 지상 29층(1468)
연면적	213035.7141(㎡)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하우드엔지니어링(주)평택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22-주-에너지-0013
평가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사용종결 또는 사용종결사 완료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인증연도별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양	인증연도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인증연도별 CO ₂ 배출량 (kg/㎡·년)	요율
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0	에너지효율등급	1	CO ₂ 배출 계수	21.3
에너지소비량	0	에너지효율등급	1	CO ₂ 배출 계수	21.3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인증연도별 에너지소비량 (kWh/㎡·년)	인증연도별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인증연도별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6.6	49.9	38.3	6.5
급탕	30.7	37.6	27.7	6.2
조명	11.8	10.9	20.1	5.1
기계	9.3	8.9	8.9	1.5
합계	79.1	101.6	105.0	21.3

■ 인증연도별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인증연도별 에너지량
■ 인증연도별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의 용지량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인증연도별 에너지량
■ 인증연도별 1차 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량별 연료의 재차,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중의 손실을 포함한 인증연도별 에너지량
■ 인증연도별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인증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기) [] 설치된 [V] 용지(지하)만 건축되었습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한국 주택 환경을 넘어 해외, 국제시장에 대한 인증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증연도별 1차에너지소비량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1월 12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대화	(주)성우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110,069,000	965,594,173	1,115,400,000

(단위 : 원 / VAT 포함)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입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378,955,878,000원	제 01212022-101-00007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21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 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 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채·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상 호	일신건영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
법인등록번호	110111-0655477
전화번호	02-480-3189, 02-480-3159

■ **건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안내**



- 건본주택 위치 안내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성해리 292
- 현장 위치 안내 :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7-1BL
- 운영기간 : 2022.02.11.(금) ~ 분양 종료 시
- 분양문의 : 1577-9333
- 홈페이지 주소 : <http://pt-humanvill.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모집공고에 미기재된 사항이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